

「해양수산자원 산업화 육성 지원(바이오)」 수혜기업 모집 공고

(재)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해양수산자원 산업화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한 충청남도 및 서천군의 해양수산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이루는 동시에 해양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개발 여건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전국의 기업·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21일

서천군수 · (재)충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명 : 해양수산자원 산업화 육성 지원
- 지원기간 : 2026. 05. 21. ~ 2026. 06. 09.(20일간)
- 사업주관 : (재)충남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 2개 기업 이상(해양바이오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 지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조건

순 위	지원대상	가점
1순위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또는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서천)에 본사, 공장, 연구소를 사업기간 내(2026년 11월 30일)이전 및 건립을 희망하는 기업	15
2순위	장항국가산업단지내 본사, 공장, 연구소가 소재하거나 3년 이내에 이전 및 건립을 희망하는 기업	10
3순위	서천군에 본사, 공장, 연구소가 소재하거나 3년 이내에 이전 및 건립을 희망하는 기업	5
4순위	충남도에 본사, 공장, 연구소가 소재하거나 3년 이내에 이전 및 건립을 희망하는 기업	0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 필요)

■ 사업목적

- 해양바이오 창업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한 초기 진입장벽 완화
- 지역 해양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협력 기반 R&D 확대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지원 내용

[연구개발]

※ 아래 분야 중 택 1

분야	내용
전략소재 개발	해양생물자원(식물·동물·미생물·수자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에 활용 가능한 효능·성능을 지닌 전략소재 개발
상품화 공정 개발	해양생물자원(식물·동물·미생물·수자원 등) 소재가 활용된 제품의 상품화 공정 개발을 통한 시장 출시 등 최종 상용화 도출

[사업화 컨설팅]

- 사업계획서 고도화, 기술 로드맵 설계 등 기업 맞춤형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지원

[시장 진출]

- 국내 박람회 참가, 투자사 1:1 매칭 등 시장 진입 가속화 및 판로 개척 지원

○ 세부 지원 내용

※ 추후 선정 규모 및 지원금 변동 가능

지원 대상	선정 규모	지원금	지원기간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2개 기업 이상	7,000만원 내외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11.30.까지

※ 과제당 지원금은 '26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 또는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앙 및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중복과제 확인 시 전액 환수 조치

- 본 사업은 확정된 지원금 범위 내에서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함.
- 세부사항 :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참여기업 부담기준

구분	참여기업 부담 기준	참여기업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총 부담금액의 10% 이상

※ 총 연구개발비 = 지원금 + 기업부담금(현물, 현금)

※ 개발 완료 후 별도의 기술료 납부 없음

2. 신청자격

■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 2개 기업 이상(해양바이오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 지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 조건

순 위	지원대상	가점
1순위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또는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서천)에 본사, 공장, 연구소를 사업기간 내(2026년 11월 30일)이전 및 건립을 희망하는 기업	15
2순위	정향국가산업단지내 본사, 공장, 연구소가 소재하거나 3년 이내에 이전 및 건립을 희망하는 기업	10
3순위	서천군에 본사, 공장, 연구소가 소재하거나 3년 이내 이전 및 건립을 희망하는 기업	5
4순위	충남도에 본사, 공장, 연구소가 소재하거나 3년 이내 이전 및 건립을 희망하는 기업	0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 필요)

- 예비창업자: 협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창업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지원 대상자 선정

○ 단독 참여

- 상기 지원대상 및 조건을 만족하는 해양바이오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 지 7년 이내 창업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 필요)

○ 공동 참여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상기 지원대상 및 조건을 만족하는 해양바이오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 지 7년 이내 창업기업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제1항의 각 호>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05. 21.(목) ~ 2026. 06. 09.(화)
- 접수기간 : 2026. 06. 08.(월) ~ 2026. 06. 09.(화), 18시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워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사전에 사업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은 6월 08일(월) 이전 접수분에 한함)
- 신청서(양식)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ctp.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처 : 충남테크노파크 그린바이오센터(예산)
- 주 소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산단3길 226, 충남테크노파크 그린바이오센터 1층
(e-mail : dudrbs83@ctp.or.kr)

■ 제출서류

No	신청서류	부수	비고
①	신청 공문(발신처 : 신청기업, 수신처 : 충남테크노파크)	1부	필수
②	연구개발계획서 ※ 원본1부, 사본 7부 제출(PDF 파일로도 제출)	8부	필수
③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1부	필수
④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1부	필수
⑤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최근 3년치)	1부	필수
⑥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필수
⑦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상품화 공정개발 지원기업은 필수	1부	해당시
⑧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필수
⑨	수행기관 현금현물출자 협약서	1부	필수
⑩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1부	필수
⑪	주사무소, 생산시설(공장), 연구시설 이전 및 건립 예정 확인서	1부	필수
⑫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1부	필수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평가점수는 연구계획의 적절성(연구목적의 타당성, 세부수행 계획의 구체성, 선행연구실적 등), 추진체계 및 연구역량의 적합성(연구개발 조직, 인력현황, 전문성 및 시설·장비 보유 및 운영현황 등), 연구성과 활용계획(사업화·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계획 등) 등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지원 대상기관(기업) 선정은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후, 제출된 연구개발 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하여 최종종합평가점수(우선지원대상 포함)가 최고점인 신청기관을 선정(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하며,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아니함)
- 종합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100점 만점)를 산술평균(평가위원이 7명 이상인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이며, 최종종합평가점수는 종합평가점수에 우선지원대상 가감점을 반영한 점수임
- 우선지원대상 항목
 - 최근 5년간 각종 국·도비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기업 가점(2점)
 - “해양수산자원 산업화 육성 지원(바이오)” 사업 전략소재 개발 및 전략공정 개발 각 사업에 3회 이상 선정된 기업은 참여 제한
 - ※ 특정업체에 대한 보조사업 특혜 및 집중 지원 방지
 - 최근 3년간 “해양수산자원 산업화 육성 지원(바이오)” 사업 전략소재 개발에 선정된 기업은 해양바이오 상품화 공정개발 참여 시 가점(5점, 1회 한정)
 - ※ 가점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필수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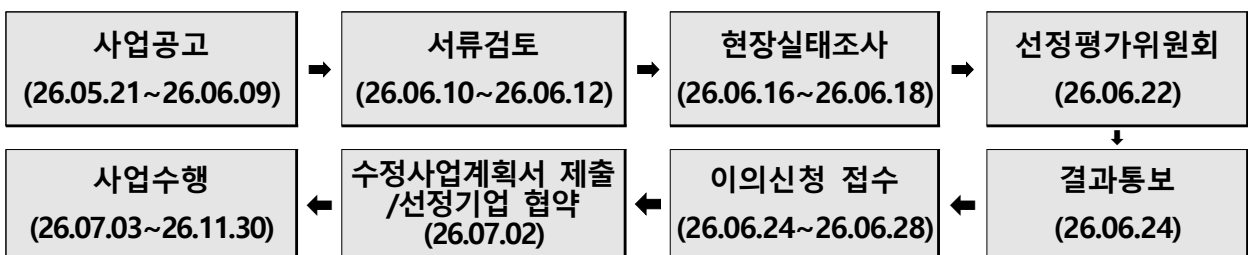
○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연구대상 (30%)	· 최종목표 및 최종성과물의 설정은 명확하고, 타당한가	20
	· 연구개발 목적이 달성될 경우, 학문적/기술적/경제적 발전에 큰 영향력을 갖는가	10
연구개발 계획 (30%)	·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연구동향/시장현황/정책동향/선행연구와의 차별화 등)는 충실하며, 연구개발계획에 반영되었는가	5
	· 연구개발 목표/내용/방법 등 연구개발계획은 구체적이며 창의적인가	15
	· 최종목표 및 연차(단계)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정량적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설정은 적절한가	10
추진체계 (15%)	· 추진체계는 연구개발 추진전략, 연구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10
	·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및 연구성과의 연계 방안은 명확하고, 적절한가	5
연구역량 (15%)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관리방안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10
	·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5
성과활용계획 (10%)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10
합계		100

- 사전검토 : 관리기관의 제출서류 사전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포함
- ※ 필요 시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과제수행 적합성 조사(전문가 1~2인 및 간사)

- 평가방법 :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예정

■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평가결과에 대해 중대한 평가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서(자유양식)제출 가능

5.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참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항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도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연구개발 과제 참여가 가능함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다만, 동 시행령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2022. 12. 6., 2024. 2. 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합계는 원칙적으로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가능함

○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 제외

- 부도, 휴·폐업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의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6.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탁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해당 사업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바. 성과활용기간(3년) 내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이전 및 건립 조건이 완료 되지 않은 수혜기업은 사업비 전액 환수조치
- 아래의 경우 모집공고기간 변경, 추가 모집을 진행할 수 있음
 - 가. 각 사업별 수혜기업 지원목표 미달 시
 - 나. 선정된 기업이 수행기관 중 포기할 시

■ 문의처

구 분	담당자		연락처
사업 전반 및 신청, 평가 등 문의처	충남테크노파크 그린바이오센터	김영균 과장	041-330-0516
			dudrbs83@ctp.or.kr
산업화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입주문의	충남테크노파크 해양바이오TF팀	김기훈 주무관	041-957-9607
			wintersea@ctp.or.kr

1.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사업명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지원금	70백만원 내외
기간	2026.07. ~ 2026.11	주관 연구기관	중소기업
사업목표	○ 해양생물자원(식물·동물·미생물·수자원 등)을 대상으로 제품개발에 활용이 가능한 핵심성능(규명 및 활용 가능한 지표성분, 효능성분)을 지닌 전략소재 개발		
사업내용	○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발굴 및 확보 - 효능성분 규명 및 분석법 개발 - 원료의 규격화(시기별·부위별·원산지별 비교분석, 기원, 국내외 허가 및 상용화 사례, 유효성자료, 지표성분, 효능성분, 분석법, 유해성 등)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 (설정근거, 평가기준 등)
	소재 규격화/표준화	1건 이상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 미생물, 중금속함량, 지표성분/효능성분 및 분석법 등
	효능입증	1건 이상	소재의 유효성 등 효능입증지표 제출(세포, 동물)
	고용창출(신규채용)	1명/년	고용계약서
지원조건	○ 대량확보가 가능한 원물 대상 ○ 선행연구결과 제시 및 대량확보 가능성 제시		
지원분야	○ 기능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적용소재) 활용 대상		
기타	-		

2. 해양바이오 상품화 공정개발

사업명	해양바이오 상품화 공정개발	지원금	70백만원 이내
기간	2026.07. ~ 2026.11	주관 연구기관	중소기업
사업 목표	○ 해양생물자원(식물·동물·미생물·수자원 등) 소재가 활용된 제품의 상품화 공정 개발을 통한 시장 출시 등 최종 상용화 실현		
사업 내용	○ 해양바이오 상품화 대량생산 시스템 및 고도화 공정개발 - 기존 공정대비 고도화, 단축 및 경비 절감된 상품화 공정 개발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 (설정근거, 평가기준 등)
	원료 제조공정 최적화	1건	대량생산을 위한 scale-up 연구 결과, 기능고도화 및 공정 최적화 등
	특허출원/등록	1건	원료추출공정, 배양기술, 효능검증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확보
고용창출(신규채용)	1명/년	고용계약서	
사업화매출액	지원금의 3%	판매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등	
지원 조건	○ 경제성 제고 등 상품화 가능 조건 제시		
지원 분야	○ 기능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적용소재) 활용 대상		
기타	-		